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매도·연금 가입 조건 직불금 지급

양선우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2-11 12:00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만 65세~만 84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

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

신청 대상 요건

농업인 요건

약장제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지원단가*

- ① 매도(분할지급)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1ha당 50만×지급기간×지급률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약정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①과 ②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평액만큼 차감 후 지원

지급상한 면적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지원

연령	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하	만 76세	만 77세	만 78세	만 79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연령	만 80세	만 81세	만 82세	만 83세	만 84세
지급기간	5년	4년	3년	2년	1년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은?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

지원 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금사매도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은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도지사는 지난해 19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6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 '분할지급형' 보조금 수령 방식에서 '일시지급형'이 추가되면서 연령에 따라 가입 즉시 총 보조금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가입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식 및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